

『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22일

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이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“ 100분의 5”를 “ 100분의 3”으로 하향
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100천원”을 “ 300천원”으로 상향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변화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체납된 사용료의 가산금 “ 100분의 5”를 “ 100분의 3”으로 하향
 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100천원”을 “ 300천원”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,
소액체납자 즉, 300천원미만 체납자의 증가산금 폐지에 따른 체납세 증가가 우려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